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74382 판결 [사해행위 취소]

---

##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종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12.

## 주 문

- ① 피고들과 D이 2019. 11. 4.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약>를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1, 3-2, 4, 6-1, 6-2, 7, 을 1-1~1-3, 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이 2019. 10.경 E에게 여러 필지의 부동산(☞ 합병되기 전의 ‘여주시 F 대 856㎡’ 등)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별표>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D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G의 소유재산이었던 사실, G가 2015. 4. 중순경 사망할 당시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D과 피고들이 있었는데, D과 피고들이 2019. 11.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서 (☞ 갑 2)>를 함께 만든 다음, 그것을 첨부하여 2019.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 각 공유지분 1/3지분씩)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나아가 최근까지) D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15. 4. 19.자 모친 사망 무렵 이미 구두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들’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이 점을 뒷받침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갑 2의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선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 별지 목록

[토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 111㎡

[건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벽돌조 고야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4.41㎡ 2층 64.41㎡

<표1> D  의 2020. 11. 2. 현재 국세채납액

(단위 : 원)

| 세 목   | 납세의무<br>성립일 | 고지일        | 납부기한       | 귀속   | 고지세액       | 현재 체납액     |
|-------|-------------|------------|------------|------|------------|------------|
| 양도소득세 | 2019.10.31. | 2020.2.10. | 2020.3.11. | 2019 | 43,429,710 | 47,012,640 |
| 양도소득세 | 2019.10.31. | 2020.4.10. | 2020.4.30. | 2019 | 41,399,750 | 44,194,190 |
| 계     |             |            |            |      | 84,829,460 | 91,206,830 |

